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5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4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5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원고보조참가인

피 고

주식회사 D

1. 주식회사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G

변론 종결 2020. 10. 22

판결 선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90,394원 및 그 중 64,174,780원에 대하여 2020.1. 30.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66,218원 및 그 중 79,573,800원에 대하여 2020. 1.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28.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연 9%로 정하고있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2. 10.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납품 불이행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 89,551,2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9,573,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임가공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는 2017. 12. 5.경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선급금채무를 66,194,800원으로 확인하고, 위 채무를 주식회사 H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H는 2018. 7.부터 2019. 9.까지 인수한 채무 중 2,020,02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한 선급금은 64,174,780원(=66,194,800원- 2,020,020원)이다.

원고는 채무인수계약상 선급금 채무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환되지 않은 선급금의 액수는 79,573,8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4,490,394원(= 64,174,780원 + 64,174,780원에 대한 2019. 12. 31.부터 2020. 1. 29.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5,614원) 및 그 중 64,174,780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남수진